

의안번호	2206656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5.1.7.
추 계 번호	24B6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제1항) 7.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의무규정
		제1항제7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함.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

2. 상세 사유

-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수당이나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¹⁾,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

1)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함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업대상자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의 최저지급액이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추가재정소요 발생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시점에서 그 변화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통상임금에 근거한 주요 재정지출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 나. 물가상승률
 -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시간급 최저임금액 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함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함.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함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